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10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10.19.

다. 상정일자

-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8.10.29.) 상정, 심사, 보류
-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 3. 6.) 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】

가. 제안이유

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·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7조)
-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·지원(안 제8조 ~ 제14조)
-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5조 ~ 제20조)
-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21조 ~ 제27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조희옥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,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,
-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-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 심화, 마을공동체 약화, 사회안전망 취약 등 각종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음.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.

-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,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, 사회안전망 회복, 협동의 문화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,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은 물론 사회공동체 조성 및 균형 잡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,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이를 위해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기본조례 및 활성화 지원조례 형태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,
- 조례 제정으로 사업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면 개별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조직형태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법적근거 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 되는 바,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,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과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,
- 사업추진 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 적정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, 단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임.
- 또한 개별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조정과 함께 조직별로 지원되는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,

-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, 재정 지원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